

「교육혁신원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2. 3. 7. 개정 판 (시행 2022. 3. 7.) → 2022. 5. 16. 개정 판 (시행 2022. 5. 1.)

바뀜 4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24/compare?from=1289&to=1341>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전 8:53:23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u>핵심역량 진단 분석 및 개선</u> 6. <u>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u> 7. <u>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u> 8. <u>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u> 9. <u>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u> 10. <u>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u> [제목개정 2020.02.24.]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01-17>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u>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u> 7. <u>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u> 8. <u>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u> 9. <u>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u>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 3. <삭제> 2020.02.24 4. 교수학습개발센터 5.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6. <삭제> 2019.05.13 7. 원격교육지원센터 8. <삭제> 2019.05.13. 9. 비교과통합센터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제7조(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 데이터기반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u>핵심역량진단도구 개발 및 연구</u> 2. <u>핵심역량 진단 및 분석</u> 3. <u>핵심역량 관련 컨설팅</u> 4.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5.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6.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7.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8.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9.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7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9-05-01>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현 행	개 정 안
[제목개정 2019.05.13.]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벌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육혁신원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제12조(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① 교육혁신원의 주요업무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글로벌사회혁신원장, 스미스학부대학장, 일자리본부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1-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회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02-24> [제목개정 2020.02.24., 2022.01.17]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육혁신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업) 교육혁신원은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
2. 교수-학습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 운영, 평가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3. 교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
4. 대학교육의 데이터 기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성과 관리
5.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체제 구축 및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비교과교육과정의 기획, 관리, 연계방안 수립 및 비교과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비교과 프로그램 요구조사 및 기획, 개발, 평가
9. 기타 교육혁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02.24.]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직) 교육혁신원은 다음 각 호의 조직으로 구성한다.

1. 교육혁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2.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
3. 교수학습개발센터
4. 교육인증센터
5. 원격교육지원센터
6. 비교과통합센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교육인증센터) 교육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분석 및 연구
2. 교육 성과분석 및 교수학습과정 분석

3. 교육서비스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지원
4.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5.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5.13.]

제12조제2항 중 "교육혁신원팀장"을 "교수학습개발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장, 교육인증센터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